

신남방

인도네시아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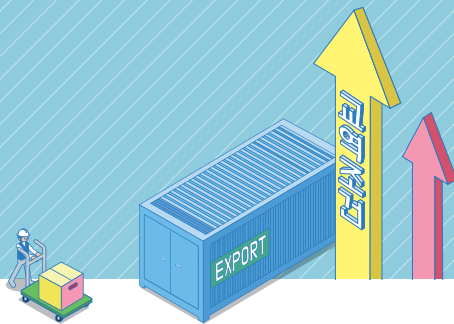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331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347
03. 비관세장벽 현황	350
04. 수출 애로사항	360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363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용어 정의]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2년 식품 시장규모는 2,178억 달러(한화 약 285조 3,311억 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모든 식품 품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956억 달러(한화 약 125조 2,884억 원)로 집계됨
 - * 채소류 시장이 306달러(한화 약 40조 336억 원)로 신선식품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크며(14.0%), 낙농품(10.5%), 과일 및 견과류(10.0%)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1,222억 달러(한화 약 160조 427억 원) 규모임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규모가 466억 달러(한화 약 61조 722억 원)로 가장 규모가 크며, 스낵류 시장이 352억 달러(한화 약 46조 1,251억 원)를 형성함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66.7	181.0	185.9	205.6	217.8	100.0	5.9
신선식품	72.7	79.0	80.9	89.6	95.6	43.9	6.8
- 채소류	23.0	24.9	25.7	28.4	30.6	14.0	7.5
- 낙농품	17.4	18.9	19.5	21.5	22.9	10.5	6.2
- 과일 및 견과류	16.3	17.8	18.3	20.2	21.8	10.0	7.9
- 육류	12.5	13.6	13.7	15.1	15.9	7.3	5.3
- 유제품	3.5	3.7	3.8	4.2	4.5	2.1	5.7
가공식품	94.0	102.0	105.0	116.1	122.2	56.1	5.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6.5	39.6	40.7	44.9	46.6	21.4	3.9
- 스낵류	25.0	27.8	29.2	32.8	35.2	16.2	7.4
- 편의식품	12.4	13.4	13.7	15.1	16.0	7.3	5.5
- 스프레드 및 당류	10.4	10.7	10.4	11.0	11.3	5.2	2.1
- 소스 및 향신료	5.8	6.3	6.5	7.1	7.6	3.5	6.0
- 영유아용 식품	2.9	3.2	3.4	3.6	3.8	1.8	6.7
- 펫푸드	0.9	1.1	1.3	1.5	1.7	0.8	14.7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2억 7,550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 별 인구 수는 균등한 편으로,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도 전체 인구의 약 24.5% 수준임
 - 여성 인구 수는 1억 3,680만 명(약 49.7%), 남성 인구 수는 1억 3,870만 명(50.3%)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음
- 2022년 가구 수는 5,775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540달러(한화 약 333만원) 규모임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1년 대비 5.39% 증가함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약 36.2%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4.5% 증가함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780.3달러(한화 약 102만원)로 집계됨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342.6달러(한화 약 45만원) 수준으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43.9% 차지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함
 - 가공식품 소비액은 총 437.7달러(한화 약 57만원)이며,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167.0달러(한화 약 21만 8,770원)로 가장 큰 비중(21.4%)을 차지함

1인당 식품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22.6	668.8	679.8	744.0	780.3	100.0	4.9
신선식품	271.5	291.9	295.8	324.1	342.6	43.9	5.7
- 채소류	85.7	92.2	93.9	102.9	109.5	14.0	6.4
- 낙농품	46.7	50.4	50.0	54.8	57.1	7.3	4.2
- 과일 및 견과류	65.1	69.9	71.2	77.9	81.9	10.5	5.1
- 육류	61.0	65.6	66.8	73.2	78.1	10.0	6.8
- 유제품	12.9	13.8	14.0	15.3	16.0	2.0	4.5
가공식품	351.2	376.9	384.1	419.9	437.7	56.1	4.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36.5	146.3	148.6	162.4	167.0	21.4	2.8
- 스낵류	93.5	102.7	106.6	118.6	126.2	16.2	6.4
- 편의식품	46.3	49.6	50.2	54.7	57.2	7.3	4.4
- 스프레드 및 당류	38.7	39.3	38.1	39.9	40.4	5.2	1.1
- 소스 및 향신료	21.7	23.3	23.6	25.8	27.1	3.5	5.0
- 영유아용 식품	11.0	11.6	12.3	13.0	13.8	1.8	5.6
- 펫푸드	3.5	4.1	4.7	5.4	6.2	0.8	13.2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신선식품 주요 품목 중 1인당 소비량이 가장 큰 품목은 채소류로 총 76.3kg이며, 전년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임

* 낙농품 소비량은 40.4kg, 과일 및 견과류 32.2kg, 육류 9.9kg, 유제품 2.8kg 수준으로 소비됨

- 가공식품 중에서는 2022년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이 125.9kg으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0.2%의 감소율을 보임

* 뒤이어 스프레드 및 당류 20.9kg, 스낵류 17.6kg, 편의식품 13.1kg 순으로 집계됨

1인당 식품 소비량(2018~2022)

(단위 :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67.5	69.5	71.0	73.9	76.3	3.3
	- 낙농품	38.1	38.3	38.7	39.7	40.4	2.0
	- 과일 및 견과류	28.6	29.3	30.0	31.2	32.2	3.4
	- 육류	9.1	9.3	9.4	9.8	9.9	1.3
	- 유제품	2.6	2.7	2.7	2.8	2.8	1.1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24.2	123.3	123.7	126.1	125.9	-0.2
	- 스프레드 및 당류	24.5	23.5	22.5	22.0	20.9	-4.9
	- 스낵류	15.3	15.7	16.3	17.0	17.6	3.4
	- 편의식품	12.8	12.7	12.7	12.9	13.1	1.2
	- 소스 및 향신료	8.3	8.2	8.2	8.4	8.5	1.7
	- 펫푸드	2.8	3.0	3.2	3.6	3.9	9.8
	- 영유아용 식품	0.6	0.6	0.6	0.6	0.7	4.7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농식품 수출액 514억 9,177만 달러(한화 약 67조 4,542억 원)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규모로 집계됨

- 중국(17.8%), 인도(11.5%), 미국(9.0%) 등으로 주로 수출되며,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음

*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91억 4,379만 달러(한화 약 11조 9,784억 원)로 전년 대비 6.8% 증가함

* 인도로는 59억 2,117만 달러(한화 약 7조 7,567억 원)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51.4% 대폭 증가함

* 환태평양아시아 수출액은 33억 547만 6,000달러(한화 약 4조 3,302억 원)로 전년 대비 21.8% 증가함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8억 5,913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5,263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8.8%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 '22)	연평균 ('18~'22)
전체	31,679,662	29,250,376	33,330,193	47,330,559	51,491,770	100.0	8.8	12.9
1 중국	4,122,053	4,735,681	5,093,905	8,565,373	9,143,790	17.8	6.8	22.0
2 인도	3,987,726	2,701,325	3,500,169	3,909,980	5,921,170	11.5	51.4	10.4
3 미국	2,538,710	2,402,440	2,667,729	4,184,411	4,654,718	9.0	11.2	16.4
4 말레이시아	1,853,428	1,735,468	1,913,824	2,713,632	3,305,476	6.4	21.8	15.6
5 파키스탄	1,527,014	1,230,545	1,737,096	2,883,702	3,223,512	6.3	11.8	20.5
6 필리핀	1,239,962	1,294,326	1,248,919	1,777,608	1,927,747	3.7	8.4	11.7
7 베트남	866,379	728,062	1,001,789	1,504,802	1,720,539	3.3	14.3	18.7
8 네덜란드	1,523,844	1,163,349	1,162,437	1,399,888	1,589,069	3.1	13.5	1.1
9 방글라데시	907,824	769,302	769,986	1,477,359	1,568,393	3.0	6.2	14.6
10 일본	812,380	815,458	957,278	1,126,130	1,165,141	2.3	3.5	9.4
16 한국	571,096	484,827	475,388	723,419	859,131	1.7	18.8	10.7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은 유지류 및 가공식품 위주인 것으로 나타남

* 팜유 기타 수출액은 243억 5,570만 3,000달러(한화 약 31조 9,060억 원)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전체 47.3%의 비중을 차지함

* 팜유(조유) 수출액은 34억 1,012만 7,000달러(한화 약 4조 4,673억 원)로 전년 대비 24.6% 증가함

* 뒤이어 팜핵유 기타 수출액 18억 9,113만 달러(한화 약 1조 4,774억 원), 마가린 기타가 18억 4,581만 1,000달러(한화 약 2조 4,180억 원) 수출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 '22)	연평균 ('18~ '22)
전체	31,679,662	29,250,376	33,330,193	47,330,559	51,491,770	100.0	8.8	12.9
1 팜유 기타	12,951,023	11,074,588	12,621,245	24,017,213	24,355,703	47.3	1.4	17.1
2 팜유(조유)	3,576,825	3,641,687	4,743,567	2,737,923	3,410,127	6.6	24.6	-1.2
3 팜핵유 기타	1,368,561	868,916	1,087,297	1,850,889	1,891,130	3.7	2.2	8.4
4 마가린 기타	777,007	660,163	770,420	1,519,379	1,845,811	3.6	21.5	24.1
5 식물성 지방 분획물	283,343	254,412	288,508	837,884	1,418,807	2.8	69.3	49.6
6 볶지 않은 커피	808,735	872,355	809,164	849,373	1,136,296	2.2	33.8	8.9
7 유박 기타	3,091	29,514	49,416	126,191	1,110,600	2.2	780.1	335.4
8 팜너트 추출 유박	607,117	562,701	664,603	1,153,687	1,067,453	2.1	-7.5	15.2
9 조제식료품	421,650	390,091	489,466	602,133	683,425	1.3	13.5	12.8
10 코코아 버터	824,048	785,448	790,990	668,247	636,336	1.2	-4.8	-6.3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2년 농식품 수입액은 282억 5,169만 8,000달러(한화 약 37조 97억 원)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함

- 호주산이 전체 1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미국산(12.6%), 브라질산(12.1%)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호주산 수입액은 38억 8,090만 5,000달러(한화 약 5조 840억 원)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4%의 성장세를 기록함

* 미국산 수입액은 35억 6,542만 7,000달러(한화 약 4조 6,707억 원)로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기록함

* 브라질산 수입액은 34억 1,346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4,716억 원)로 연평균 25.9%의 성장률을 기록함

- 한국산 수입액은 2억 2,262만 6,000달러(한화 약 2,916억 원)로 전체 0.8%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연평균 7.5% 증가율을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21,459,555	19,955,265	19,324,505	24,449,879	28,251,698	100.0	15.5	7.1
1 호주	2,427,923	1,917,894	1,828,412	3,711,712	3,880,905	13.7	4.6	12.4
2 미국	3,392,275	3,164,139	3,001,740	3,258,982	3,565,427	12.6	9.4	1.3
3 브라질	1,357,407	1,308,577	2,022,081	2,118,064	3,413,464	12.1	61.2	25.9
4 중국	2,575,951	2,651,277	2,547,740	2,812,851	3,126,118	11.1	11.1	5.0
5 인도	1,043,204	840,115	1,100,326	2,274,112	2,564,336	9.1	12.8	25.2
6 아르헨티나	1,397,080	1,768,396	1,707,695	1,962,189	2,320,021	8.2	18.2	13.5
7 태국	2,480,776	1,877,267	1,283,607	1,135,195	2,102,707	7.4	85.2	-4.0
8 뉴질랜드	544,756	545,693	606,600	741,601	1,126,164	4.0	51.9	19.9
9 캐나다	631,055	791,800	769,181	830,513	883,363	3.1	6.4	8.8
10 말레이시아	630,683	544,879	429,306	524,806	661,026	2.3	26.0	1.2
15 한국	166,776	154,390	153,042	192,396	222,626	0.8	15.7	7.5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은 밀 기타와 대두유 추출 유박, 사탕수수 기타 등임

* 밀 기타는 38억 1,039만 3,000달러(한화 약 4조 9,916억 원)로 전년 대비 7.4% 증가함

* 대두유 추출 유박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31억 9,378만 9,000달러(한화 약 4조 1,839억 원)로 집계됨

* 사탕수수 기타 수입액은 전년 대비 26.7% 증가한 28억 2,511만 8,000달러(한화 약 3조 7,009억 원)로 집계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21,459,555	19,955,265	19,324,505	24,449,879	28,251,698	100.0	15.5	7.1
1 밀 기타	2,570,951	2,799,260	2,616,036	3,548,356	3,810,393	13.5	7.4	10.3
2 대두유 추출 유박	2,045,261	1,658,749	1,938,225	2,679,429	3,193,789	11.3	19.2	11.8
3 사탕수수 기타	1,754,948	1,317,596	1,813,552	2,229,890	2,825,118	10.0	26.7	12.6
4 대두 기타	1,103,102	1,064,565	1,003,421	1,482,849	1,627,091	5.8	9.7	10.2
5 고체 우유	322,766	441,747	541,583	595,576	860,467	3.0	44.5	27.8
6 조제식료품	501,418	492,866	495,038	629,522	783,219	2.8	24.4	11.8
7 냉동 쇠고기	523,414	600,223	507,771	664,811	735,272	2.6	10.6	8.9
8 냉장 마늘	497,259	529,965	585,785	665,818	597,795	2.1	-10.2	4.7
9 코코아두	630,575	496,045	475,947	506,474	565,278	2.0	11.6	-2.7
10 탈각 땅콩	528,946	584,567	505,495	616,927	547,289	1.9	-11.3	0.9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현황

-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 2억 4,593만 3,000달러(한화 약 3,222억 원)로 전년 대비 1.0% 증가함

- 전체 수출액 비중의 85.0%는 농산물이 차지하며, 축산물, 임산물 순으로 뒤따름

* 농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5.3% 증가한 2억 894만 7,000달러(한화 약 2,737억 원)로 집계됨

- 수출 상위품목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커피크리머, 기타 무알콜 음료, 라면 등이 수출됨

* 커피크리머 수출액은 5,175만 1,000달러(한화 약 678억 원)로 전년 대비 5.1% 증가함

* 기타 무알콜 음료 수출액은 1,459만 달러(한화 약 191억 원)로 전년 대비 5.6% 증가함

* 라면은 전년 대비 2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건조 김이 전년 대비 127.7%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204,971	169,741	179,097	243,537	245,933	100.0	1.0	4.7
농산물	174,388	149,844	149,237	198,403	208,947	85.0	5.3	4.6
축산물	25,764	8,726	22,103	35,620	29,499	12.0	-17.2	3.4
임산물	4,819	11,171	7,757	9,514	7,487	3.0	-21.3	11.6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204,971	169,741	179,097	243,537	245,933	100.0	1.0	4.7
1 커피크리머	41,264	36,833	33,692	49,231	51,751	16.3	5.1	5.8
2 기타 무알콜 음료	19,337	8,163	7,914	13,816	14,590	4.6	5.6	-6.8
3 라면	18,157	21,894	11,998	11,646	14,132	4.4	21.3	-6.1
4 건조 김	2,134	1,833	4,701	5,000	11,381	3.6	127.7	52.0
5 조제식료품 기타	8,429	5,960	9,248	14,270	10,708	3.4	-25.0	6.2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할랄인증 취득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2024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할랄인증 취득이 의무화될 예정(식품 및 음료는 24년 10월 시행 예정) - 할랄인증 취득 시 인도네시아 할랄청과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	국내 수출업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식품등록 및 SNI 인증 취득	(식품등록)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에 식품등록 신청 후 사업자 식별번호 발급 필요 (SNI 인증) 인스턴트커피, 비스킷 등 일부 품목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에서 발급하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SNI) 인증 취득 필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사전통지 및 관세납부	(사전통지)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도착 최소 24시간 전에 현지 관세청에 제출 정보와 함께 도착예정 사실을 통지 (관세 납부) 수입신고서 제출 전 관세 및 기타 제세 납부 필요	인도네시아 운송·수입 업체
수입신고	- 물품 하역 후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① 수입신고서 ②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③ 상업송장 ④ 포장명세서 ⑤ 원산지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수입검사	-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통관채널을 구분하며, 수입검사 내용 상이 ① 녹색채널 : 저위험식품, 화물검사 면제 ② 적색채널 : 고위험식품, 화물검사 시행 - 신선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화물 도착 7일 전 '신선 농산물 수입계획'을 인도네시아 농림검역본부에 제출 필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물품 반출	상기 절차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할랄인증 취득	●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는 사전에 할랄인증을 취득을 권장 -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랄 식품임을 인증하는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함 - 2023년 11월 기준 식품의 할랄인증 취득은 권장사항이나 2024년 10월부터 식품의 할랄인증 취득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할랄이 아닌 성분 및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비할랄 라벨링 규정'을 준수한 식품에 한해 인도네시아로 수출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 -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에서 취득 가능하며,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와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국내(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취득할 수 있음 - 국내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할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청에서 취득하는 것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국내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권장됨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인도네시아 수출 시 한-인니 CEPA, 한-아세안 FTA 및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한-아세안 FTA 관세율 활용 시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한-인니 CEPA 관세율 활용 시 선적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인정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 법인·완제품 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	--

수출신고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 거래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 인도네시아와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인도네시아로 과실류 및 열매채소류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탄중프리옥향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과실파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충청남도산 배를 제외하고 다른 한국산 농산물의 탄중프리옥향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지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 국내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 수출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안전성 검사를 신청 - 수출업체는 검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안전성 검사 담당자는 신청 시료를 수거하여 지원분석실에서 시료 분석을 실시함 - 수출에 적합한 신선 농산물은 검사 후 분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석증명서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가 수입검역 과정에서 제출함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개요	● 인도네시아는 ‘선 통관 사후 심사’가 원칙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관세 및 제세 납부 필요 - ‘선 통관 사후 심사’ 원칙으로 본격적인 심사는 통관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통관 후 물품 인수까지 마쳤더라도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은 아님 - 지역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제품의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의 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내에 신고 내용이 재검토될 수 있음 - 재검토 결과 문제 발생 시, 수입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수입업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통관 당시의 수입신고서 및 기타 선적서류를 모두 보관해야 함
----	---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식품 등록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에 식품 등록 필요 -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모든 가공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유통될 수 있음 - OSS(Online Single Submission)에 수입식품등록허가 신청 후 접수 승인 필요 - OSS 등록 완료 시 사업자식별번호(NIB)가 부여되며, 사업자식별번호는 기업등록증, 수입허가서, 관세청 등록번호를 대체하므로 사업자식별번호를 발급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서 및 관세청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 또한, 식품 등록이 완료된 수입업체 역시 OSS 신규 등록 사이트에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함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규격 인증 취득	●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 및 식품 원료 중 일부 품목은 의무적으로 SNI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 취득 필요 - 생수(미네랄워터), 인스턴트커피(블랙), 비스킷, 소금, 밀가루, 고등어 통조림, 참치통조림 등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함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품목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 URL : sispk.bsn.go.id -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 취득 절차

①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 대상 품목 확인

② 해당 분야 심사기관 조회

③ 심사 인증 기관 상담 및 신청

④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시험검사를 통과 시 인증서 발급

⑤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 기구에 인증서 등록

사전통지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및 운송업체는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도착 최소 24시간 전에 현지 관세청에 도착 예정임을 통보 필요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운송수단의 도착 예정과 함께 다음의 정보를 인도네시아 세관에 통지해야 함

인도네시아 사전통지 제출 정보

① 운송사 상호
② 선박편, 항공편 등 운송수단 식별번호 및 운송수단 명칭
③ 출발항 및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도착 직전의 최종 기착지 및 목적항
④ 도착예정일
⑤ 하역 예정의 포장, 컨테이너 및 벌크 제품의 개수
⑥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관세 납부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수입신고서 제출 전 관세 및 기타 제세 납부 필요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외국환은행 및 세관을 통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제세를 납부해야 함
 - 탄중 프리옥 항구와 수카르노 하타 공항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자신고방식(EDI) 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에서는 전자방식으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할 수 있음

수입제세 계산방식

수입관세	CIF×기준 관세율
부가가치세	(CIF+수입관세)×11%
법인세	(CIF+수입관세)×2.5%(API) 또는 7.5%(NON-API)
특별소비세	(CIF+수입관세)×특별소비세율
소비세	소비세율

수입신고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하역 후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기타 서류 제출 필요
 - 수입된 물품은 검사 책임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 하에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해야 함
 - 통관을 진행하는 세관에 따라 수입신고서 제출방식이 상이함에 유의해야 함
 - 주요 세관인 탄중프리옥 세관과 수카르노하타 세관은 전자신고방식으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만, 그 외 세관은 저장매체(USB, CD)를 이용하여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수입신고서 외에도 선하증권 등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함)

수입신고

인도네시아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선하증권
③ 상업송장
④ 포장명세서
⑤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⑥ 매매 계약서
⑦ 구매 주문서
⑧ 은행 명세서(요청 시)
⑨ 제품 카탈로그나 사양서 등

- 세관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의 관세 및 기타 제세 납부 이력을 먼저 확인한 후 수입신고서를 접수함
- 4시간 이내에 수입신고서 접수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어느 반출 통로(Channel of Release)로 지정되었는지 세관으로부터 통보 받음. 만약 세관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통지서에 그 사유가 명시됨
- 세관은 내부 검토, 온라인 판매가격, 시장가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격을 확인하며 통상가격과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신고가격을 불인정함

수입검사
및 검역

- 인도네시아, 검역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 등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 강화
 - 인도네시아 법안 'No.16(1992)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은 수생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출입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함.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 부문의 최상위 법안임. 동 법안의 시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농림검역본부(IAAQ)는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임.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수산제품안전청(FQIA)을 통해 수산 제품의 검역 및 품질관리를 규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 등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신선과일 및 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반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함
-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 수입 시, 인도네시아 농림검역본부(IAAQ)가 수입검역 진행
 -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수입화물 도착 7일 전에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입계획을 인도네시아 농림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함

신선 농산물 수입계획 제출 내용

① 전체 금액	⑤ 목적지 및 경유지 항구명
② 제품 유형	⑥ 포장재 종류
③ 생산지역 및 상표	⑦ 컨테이너 번호
④ 운송수단	

- 인도네시아 검역담당관은 신선 농산물에 대한 검역식물병해생명체의 오염여부 판단을 위해 의뢰검사 및 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함
-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경우, 호박류와 오이류에 대해 과실파리 유무를 검사함
-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의 수입검사가 진행됨

●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세관에서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진행

- 인도네시아 세관은 과거 수입자의 통관거부 등 수입이력, 법규 준수도, 신용도와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함
- 물품 위험도에 따라 인도네시아 세관은 녹색채널과 적색채널로 통관채널을 구분해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진행함(2022년 4월 22일부 황색채널 폐지)

인도네시아 위험도별 통관채널 세관검사 내용

녹색채널	• 저위험식품 • 수입제세 납부 후 화물검사 없이 수입 통관 승인 • 무작위 검사 예외 대상 아님
적색채널	• 고위험식품 • 수입제세 납부 후 화물검사 시행 이후 결과에 따라 통관 승인

-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은 화물출고 동의서를 발급함

반품 반출

- **물품 창고에 화물 출고 동의서를 제출한 뒤 창고 비용 지불 후에 보세구역으로 물품 반출 가능**
 - 관세청의 승인을 득한 후 수입물품이 인도되며, 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 순서 분류에 따름
 - 수입된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 동안 항구의 임시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지만 지정기간 내 통관 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은 소유권이 세관으로 이관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이내에 통관 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구분되어 세관이 폐기, 저거, 재수출,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

FTA 체결현황

인도네시아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ASEAN 전체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일본 (ASEAN) (발효 및 서명)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한-인도네시아 CEPA 한-ASEAN FTA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콩, 감자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유자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당근, 딸기, 멜론, 참외,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오이, 마늘쫑, 도라지, 호박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느타리, 송이, 새송이, 표고, 팽이
- 화훼류 : 선인장묘, 채송화묘, 다육식물, 스테비아묘

* 주요 신선·건조농산물 중 수출금지 품목 없음(단중프리오향 제외)

* 과실류와 열매 채소류는 수출식품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란에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영어로 부기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는 단중프리오향(자카르타) 과부하 해소 및 과실파리 유입방지를 위해 단중프리오향 입항에 제한을 두고 있음 : 현재 한국의 경우, 충청남도산 배만 단중프리오향 반입이 가능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 하기의 추가 부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This consignment is complied with the Indonesian phytosanitary requirements, produced from Chungcheongnam Province which recognized as pest free areas referred in the Decree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No.13/KPTS/OT.140/L/01/2014 dated 6 January 2014 and free from Indonesian pest concern.”

● 축산물

- 효소제, 깃털 제품

3)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3), <https://www.qia.go.kr/listWebQia3WGYJYQ.do?clear=1>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과실류 : 블루베리, 망고
- 채소류 : 마늘, 수박
- 특작류 : 인삼
- 종자류 : 팥, 더덕, 딸기
- 묘목류 : 딸기묘, 알로카시아묘

* 상기 품목 외에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 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무궁화 유통 MGH(인도네시아)
업체 유형	한인마트
담당자명	Mr. Miftah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한국산 과일 과일 중에서 배, 복숭아, 샤인머스켓이 특색 있는 맛과 높은 품질로 인기 있으며, 한국산 배가 들어간 샐러드나 스낵이 인기를 끌고 있음
 - 한국산 딸기는 인도네시아산 딸기에 비해 크기도 크고 당도가 높아 추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한국산 복숭아는 당도가 높고 향긋해서 현지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인도네시아 복숭아를 대체할 제품을 찾으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K-pop과 한국 드라마에서 접한 한국 문화 및 요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 떡볶이 등 가공식품이 인기를 얻음
- 인도네시아로 농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 농산물의 수입 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농업검역청(BKIPM) 등 관련 공식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음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인도네시아는 Regulation 42(2019), Regulation 39(2019) 등에 근거하여 육류, 식용 내장, 열대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해 수입국별로 시장접근 승인제도를 적용함
- 인도네시아는 “향료 첨가물에 관한 2020년 NAFDC 규정 제13호”의 내용을 추가하는 2021년 식품의약품관리청(NAFDC) 규정 제11호를 발표함. 해당 규정에는 향료 보조물질, 합성 향료, 식품 첨가물에 사용이 허용되는 향료 화합물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부 변경됨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 내 통관 항구의 과부하 해소 및 과실파리 유입 방지를 위해 자카르타 인근의 판중프리옥 항구를 폐쇄하고 수라바야 항구를 이용하도록 강제함. 국가안전협정을 통해 과실파리 무발생을 인정받은 국가는 기존 판중프리옥 항구의 통관이 허용되며, 수입검역 간소화 예외조치 혜택을 받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신선농산물 수출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 기관의 분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22개 품목을 설정함
 - 수출국 식품안전담당기관은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의 경우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COA)를 제출해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에서 충분하고 저렴한 식용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팜유 수출 규제를 다시 강화함
 - 인니는 현재 기업들이 수출 허가의 대가로 생산량의 일부를 현지에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국내시장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데, 인니 수출업체들은 수출 물량이 국내 판매량의 8배에서 6배로 하향 조정됨. 인니 정부는 식용유 공급 가능성과 가격을 고려하여 수출 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농업부 법령정보포털	http://jdih.pertanian.go.id/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의약품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2/order/2/DESC
오염물질 규정	식품의약품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2/order/2/DESC
미생물 규정	식품의약품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4/order/2/DESC

통보문 개정현황(2023년)

• 팜유 수출 규제

문서번호	-
유형	수출 관련 조치
세부 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에서 충분하고 저렴한 식용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팜유 수출 규제를 다시 강화함 - 인니는 현재 기업들이 수출 허가의 대가로 생산량의 일부를 현지에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국내시장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데, 인니 수출업체들은 수출 물량이 국내 판매량의 8배에서 6배로 하향 조정됨 - 이 같은 조치는 자국 내 식용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 - 인니산 식용유의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국 내의 재고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공급 가능성과 가격을 고려하여 수출 비율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인니는 2023년 2월부터 바이오디젤의 팜유 의무 성분을 35%로 늘릴 계획임 - 인도네시아의 팜유를 사용하는 한국 식품제조업체는 인니의 팜유 관련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
통보일	-
시행예정일	2023.01.01
개정현황	-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Id=NTB0203654

2. TBT⁴⁾

주요 TBT 내용

-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2014년 33호 법률 시행규정 개정안을 발표해 2019년 11월부터 시행함. 식품과 음료는 5년간의 추가 제도기간을 두고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됨. 하람 원료가 들어간 품목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10월 이후 할랄 인증이 없으면 등록이 불가해짐
 - 2023년 11월 할랄제품보증기구는 가공식품·음료의 할랄 인증실행 방식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음료 제품의 HS코드 목록을 규정함. 할랄 인증 등록신청서에 해당 HS코드 상품 목록이 포함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은 가공식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가공식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 제34호(2019)를 개정하여 규정 제20호(2021)를 발표함. 원료비율 및 알코올 포함 시의 요구사항, 소매 식품 첨가물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 알레르겐 및 포장에 대한 설명 등을 명시함
 - 2023년 5월 식품 카테고리에 관한 2019년 규정 제34호를 개정하여 식품 분류, 식품 원료의 사용, 규제되지 않은 식품 카테고리 및 원료 평가 규정이 추가됨
 - 2023년 8월 가공식품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BPOM 청장규정 제7호)을 개정함
- BPOM은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NI)을 강화하여, 2022년 5월 301개 품목을 SNI 강제인증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통관 시 인증 획득을 의무화함. 현재 의무적으로 SNI를 취득해야 하는 식품류는 생수, 인스턴트커피, 비스킷, 광천수, 참치 통조림, 고등어/정어리 통조림 등임
- 2023년 식품의약품의 2D 바코드 적용에 관한 2018년 BPOM 규정 제33호가 제22호로 개정되어 2D 바코드 보고 기한, 바코드 인증방식, 판매허가 유효기간, 포장 내 2D 바코드 포함 요건, 인증 유효기간 등의 내용이 추가 및 변경됨

4)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식품의약품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2/order/2/DESC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HALAL 로고	• 원산지
	• 유통기한	• 순중량 또는 순부피	• 성분
	• BPOM 등록번호	• 제조사명 또는 수입자명 및 그 주소	• 제조일 그리고/또는 생산번호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및 라틴 문자로 작성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어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을 경우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	
	표기 기준	•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의약품의 경우 라벨링 표기 시 스티커 사용이 제한되어 포장재에 직접 라벨이 인쇄되어야 함	
	유통기한	• 유통기한 문구 뒤에 일-월-년 순으로 표기해야 함	
	BPOM 등록 번호	• 1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나 유통기한이 24시간 이내인 빵이나 케이크, 식초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됨	
	성분 분석표	• 라벨에 식약청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성분	• 하루 섭취량 정보와 설당 함량 정보를 표기해야 함	
		• 성분목록 또는 사용 재료와 같은 단어를 기재 후 성분을 표기해야 함	
		• 약어 형태로 표기할 수 없음	
		• 제품에 사용된 중량 내림차순으로 표기해야 함	
		• 비타민, 미네랄, 식품첨가물의 표기는 제외됨	
	순중량 또는 순부피	• 미터법에 따라 액체 가공식품은 용량, 고체 가공식품은 중량, 반고체 가공식품은 중량 또는 용량 표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할랄 인증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마크와 함께 표시해야 함	
		•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비할랄 제품(NON-HALAL)의 표기 의무가 발생함	
	원산지	• 특정 식품의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음	
	알레르기 유발물질	• 글루텐(밀, 호밀, 보리, 귀리), 조개류, 달걀, 생선, 땅콩, 콩, 우유(유당포함), 견과류, 아황산염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식품 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경우 첨가물이 속한 분류와 첨가물 명을 같이 표기해야 함 (e.g. Antioxidant : Ascorbic acid)
		인공감미료를 포함하는 경우 인공감미료가 포함되었다는 문구와 그 함량 정보 표기 필요함
		아스파탐을 포함하는 경우 '페닐알라닌을 포함하고 있으며,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그리고 '가열될 음식에는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표기해야 함
		식용 색소를 함유하는 경우 초록색 박스 안에 'PEWARNA PANGAN(Food Coloring)' 또는 'PEWARNA MAKANAN(Food Coloring)'을 표기해야 함
		식품 첨가물의 표기와 관련하여 'Free', 'Without', 'No Content'와 그 외 기타 유사한 표현에 대해 금지함
		- 가능한 표기 방법(감미료, 보존료, 착색료, 산화방지제, 조미료에만 사용 가능함) '특정 식품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Without certain food additives)' '인공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Do not contain artificial sweeteners)'
		폴리올을 포함하는 경우 '과도한 섭취는 설사 증상 등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표기해야 함
	기타	방사선에 노출된 식품의 경우 'IRADIASI(Irradiated)' 표기와 함께 로고 부착 필요. 시설의 주소, 연월, 국가 정보 및 조제 과정 정보를 포함해야 함
		방사선의 재조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TIDAK BOLEH DIRADIASI ULANG(Not to be re-irradiated)'라고 표기해야 함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에 대해 설탕, 소금, 지방에 대한 함유 정보와 건강에 대한 문구의 표기가 필요함⁵⁾
		GMO 원료를 5% 이상 포함하는 경우 'PRODUK REKAYASA GENETIK(Genetically engineered product)'라고 표기해야 함
	돼지고기 관련	돼지고기 함유 표시는 붉은 네모칸에 붉은 글씨로 돼지의 그림과 함께 표시해야 함
		식재료 과정의 돼지와 연관된 식품 접촉은 붉은 네모칸에 붉은 글씨로 돼지 그림과 함께 표시해야 함

* 출처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

5) e.g. 1인이 하루에 50g 이상의 설탕, 2,000mg의 소금 또는 67g의 지방을 섭취할 경우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Sodium 67g of fat per person per day increase the risk of hypertension, stroke, diabetes, and heart attack)

• 주스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정글 주스	
원재료명	물 사과농축액(12.5%) 설탕 산도조절제(구연산) 향료 합성사과 방부제(소르빈산칼륨) 안식향산나트륨 향산화제(아스코르빈산)	
내용량	500ml	
유통기한	병뚜껑 참조	
저장방법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개봉 후 냉장 보관	
제조사	다이아몬드 콜드 스토리지	
원산지	파푸아뉴기니	
영양성분 정보	1회 제공량 200ml	
	열량(Kcal)	110kcal
	지방	0g
	포화 지방산	0g
	단백질	1g
	탄수화물	26g
	식이섬유	3g
	설탕	23mg
	소금	10mg

● 고추장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해찬들 고추장	
원재료명	물엿	
	고추양념(25.3%)	
	물	
	밀가루	
	쌀가루	
	밀	
	소금	
	주정	
	대두	
	참쌀	
영양성분 정보	콩가루	
	누룩가루	
	내용량	500g
	유통기한	별도 표시일까지
	저장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보관, 개봉 후 냉장 보관
	제조사	CJ 제일제당
	수입사	CJ 푸드 레스타리
	알레르겐 주의 성분	밀가루, 밀, 주정, 콩가루
	1회 제공량 20g당	
	총 제공량 25회	
	열량(Kcal)	50kcal
	지방	0g
	단백질	1g
	탄수화물	10g
	설탕	4g
	소금(나트륨)	51mg

인증

[필수 인증]

• 인도네시아 BPOM 등록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의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감지,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및 식품관리 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해당 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해 필수적으로 등록을 요구함. 수입업체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현지법인이 없는 국내 기업의 경우 등록이 제한됨

인증명	인도네시아 BPOM 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 수입업자의 법률 문소, 보관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제조업체 품질관리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건강증명서, 위축장, 성분 구성정보, 제조공정, 제품 저장 정보, 생산 코드 정보, 레이블 디자인, 완제품 분석 인증서	
비용	-	
소요기간	약 3~6개월	
절차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수수료 지불 → 제품번호 통보 → 심사 → 인증 승인 및 등록번호 부여	

•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

- SNI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임. 전자기기, 의료기기, 기타 공산품, 가공식품 등에 요구되는 인도네시아의 인증 제도임. 강제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지정인증기관을 통해 SNI 인증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마크를 표시해야만 인도네시아로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인증서는 최대 4년간 유효함

인증명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	
발행 및 검사기관	인도네시아 산업부(MIT)지정 시험소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상표등록증, 카달로그 원본, 사용	
비용	5,500 ~ 25,000 USD	
소요기간	최대 3개월	
절차	신청 접수 → 공장 심사 → 샘플 검사 → 승인 및 인증발급	

• HALAL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4년 발표한 법률(No. 33/2014)이 지난 10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식품, 음료, 화장품 등의 품목에 할랄 인증이 필수 취득 사항으로 되었음. 인도네시아 이슬람 할랄 위원회(LPPOM MUI)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보증기구(BPJPH)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오는 2024년 10월까지의 할랄 인증 획득을 완료해야 함. 인도네시아 이슬람 할랄 위원회는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유럽 등지에 위치한 45개의 할랄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 한국 수출업체는 국내 상호인정기관을 통해 할랄 인증 취득이 가능함

인증명	HALAL	
발행 및 검사기관	LPPOM MUI 또는 상호인정기관(국내 KMF, KHA)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도축장 정보(필요한 경우), HAS 매뉴얼, 가공 공정도, 가공 공장 주소, 사내 할랄 교육에 대한 정보, 할랄 인증 신청서	
비용	20~50만원	
소요기간	1~2개월	
절차	서류제출 → 인증수행계약 체결 → 사전 모니터링 → 현장조사 → 인증서 발급	

• HACCP

- HACCP 인증은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제도임.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HACCP, ISO 22000, GMP 인증 3가지 중 1개 이상 취득이 필수임

인증명	HACCP(품질안전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계획서 등	
비용	20만원	
소요기간	약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심사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선택 인증]

• ISO 22000(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ISO 22000 인증은 식품의 가공업체, 유통업체 모두에 적용되는 최종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표준임. 해당 표준은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인증명	ISO 22000	
발행 및 검사기관	ISO 등록 시험 기관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인증심사 신청서	
비용	투입 심사관의 노동량 기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심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	
절차	서류제출 → 인증계약 → 계획통보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정조치 → 인증심의회 → 인증취득 →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	

• IFS Global Markets Food

- IFS Global Markets Food 인증은 식품 유통업체를 위한 인증으로, 식품의 제조와 유통, 관리 등 최종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평가 인증임. 유사 인증인 IFS Food 인증은 식품 가공업체를 위한 인증으로, 식품 가공 및 제조 과정과 완제품 최종 포장 과정까지의 안전을 평가하는 인증임

인증명	IFS	
발행 및 검사기관	IFS 지정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비용	약 900 ~ 1,000만원	
소요기간	약 24주	
절차	인증 신청 → 사전 심사 → 현장 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 발급	

04

수출 애로사항

No.	제목	할랄 인증 필수로 인한 수출 지연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TBT
1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신할랄법의 시행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은 할랄 인증 적용이 의무화되며, 제품에 따른 단계적 시행 정책에 따라 식품에는 2024년 10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의무 적용됨 - 신할랄법에 따라 할랄인증청(BPJPH)의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할랄인증청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할랄 검사를 수행해야 함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해외 할랄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외국 할랄기관이 발행한 할랄인증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할랄인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2024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식품으로는 그림, 기호, 글자로 제품 내외부에 비할랄 표기를 해야함 -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제외한 비할랄 성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색과 형태로 된 성분 분석표 추가 필요 -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여부 :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 * 해당 민간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할랄 인증을 취득한다면,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 시 할랄인증서(BPJPH)의 할랄 인증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애로·건의 사항	할랄 인증 필수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할랄 인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함		
	기타	▶ 인도네시아, 식품의 할랄인증 지침 초안 및 할랄인증 필요 식품의 HS코드 목록 공고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9041&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ED%95%A0%EB%9E%84&page=1&srchGubun=		

No.	제목	유산균 사용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SPS
2				
주요 내용	• 2023년 2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허용된 미생물 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함 - 대상 품목 : 특수 영양식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됨 - 일반 가공식품 사용 허용 미생물 목록(16종) : Bacillus coagulans, Bifidobacterium animalis, Bifidobacterium breve, Bifidobacterium lactis, Bifidobacterium longum, Lacto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lactis, Lactobacillus paracasei,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reuteri, Lactobacillus rhamnosus, Leuconostoc citreum,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 식품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 가능 - 2022년 기준 허용 목록에서 6종 제외 - 법령 시행 이전에 유통허가를 받았으며 기존에 허용된 유산균을 사용한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법령 발표 후 30개월 이내에 규정을 준수해야 함			
애로·건의 사항	•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용 가능한 유산균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사용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기타	▶ 인도네시아 유산균 규정 관련 기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300&menu_dept2=35&menu_dept3=71			

- 2023년 2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허용된 미생물 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함

- 대상 품목 : 특수 영양식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됨

- 일반 가공식품 사용 허용 미생물 목록(16종):

Bacillus coagulans, Bifidobacterium animalis, Bifidobacterium breve, Bifidobacterium lactis, Bifidobacterium longum, Lacto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lactis, Lactobacillus paracasei,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reuteri, Lactobacillus rhamnosus, Leuconostoc citreum,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us

* 식품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 가능

- 2022년 기준 허용 목록에서 6종 제외

- 법령 시행 이전에 유통허가를 받았으며 기존에 허용된 유산균을 사용한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법령 발표 후 30개월 이내에 규정을 준수해야 함

애로·건의 사항

-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용 가능한 유산균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사용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기타

▶ 인도네시아 유산균 규정 관련 기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7300&menu_dept2=35&menu_dept3=71

No.	제목	신제품 등록 시 1차 성분의 하위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COA) 제출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TBT
3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모든 가공식품은 수입업체를 통해 식품의약품청 등록이 완료되어야 유통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BPOM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8가지임 - 원산지 자유판매증명서 - 완제품 성분 및 원재료(유효기간 정보 포함) - HACCP 인증 - 완제품 시험 성적서 - 원료 및 재료 분석 증명서 - 포장 정보 - 제품코드 설명 - 위임장 - 시험 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와 관련하여, 일반 가공식품은 등록 신청시 완제품에 대한 COA와 제품 규격서(Specification)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 규격서 대신 재료에 대한 COA를 제출할 수 있음 -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주재료 및 첨가제의 모든 재료에 대한 COA가 필요하며 재료 증빙서류는 반드시 COA로 제출되어야 함		
	애로·건의 사항	신제품 등록 시 완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며,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의약품의 경우 모든 성분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필요함		
	기타	건강기능식품, 전통의약품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2022년 11월부터 OSS(Online Single Submission)를 통해 수입식품의 등록 허가 신청 후 접수 승인을 받아야, 변경된 식품의약품청 접수 사이트(www.ereg-rba.pom.go.id)에 식품을 등록할 수 있음		

1. 누룽지스낵

제품 검토 결과

• 식약청 등록 유형

No.	등록 기관	등록 유형	비 고
01	BPOM(식약청)	ML ⁶⁾	-

• 식약청 유기농 표기 사항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해외 제조 유기농 제품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포장 라벨링 표기 심사 시에 인도네시아 유기농 인증서가 없을 시 해당 제품명에서 organic(유기농) 한글 및 영문 표기 삭제, 로고 사용의 삭제 및 대표 원재료 표기에 대한 부분도 모두 유기농 부분 삭제를 조건으로 가공식품 등록 기준 충족 시 허가 등록을 승인함
-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시 일반 가공식품 제품 Makanan Ringan Ekstrudat(737) 타입에 적용되며, Makanan Ringan Ekstrudat(압축 스낵)(150129) 카테고리 등록 가능

• 유기농 인증 공통 서류 준비 사항

- 제조사의 품질관리 및 표준 운영 시스템 SOP 매뉴얼(보편적으로 ISO22000 또는 HACCP의 SOP 준비 제출 필요)
- 유기농 시스템에 대한 SOP
- 전성분표
- 제조사 국가(한국) 유기농 인증서 사본
- CFS 사본
-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 제품 공정도
- 원재료 유기농 근거 서류(재료 SPEC 및 유기농 확인서)
- 품질관리 책임자의 영문 이력서(경력사항 포함)
- 인증 신청서

6) ML(Makanan luar) 수입 일반 가공 식품 등급으로 일반식품, 음료 제품, 건조, 견과류 등 기타 가공식품

● 심사 절차 사항 및 비용

- ① 인증 신청서류 제출 접수 ▶ ② 구비서류 요건 검토 및 충족 시 비용청구서 발행 ▶ ③ 신청사 비용 납부 ▶ ④ 서류 본심사 ▶ ⑤ 추가 요구사항 또는 심사 완료 ▶ ⑥ 인증서 발급(3년 유효)
- 평균 비용 Rp.15,000,000~20,000,000(한화 약 150~200만원) : 인증 품목 수 등을 기준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인보이스 발행 및 납부 후 심사 진행(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여행 및 체류 재경비 신청사 부담)

● 특이사항

- 유기농 인증서 발급 시 유효기간은 3년이나, 매해 공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 인증기관의 경우 서류 갱신사항을 점검 및 심사하며, 공장 실사가 포함된 심사를 시행하는 인증기관은 매년 현장 실사를 진행함(이때 현장 실사와 관련된 항공비 및 재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함)

● 인도네시아 VEGAN 로고 사용 절차

- 인도네시아 BPOM의 Vegan 로고 사용에는 해당 인증서(국내외 모두 가능) 사본 그리고 DNA 동물성 미검출 검사 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이며, 조건 충족 시 Vegan 표기 사용이 가능함
- DNA 검사서는 해외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사용 가능
- 전성분 사용 재료의 모든 재료는 규격서(Specification)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식품류의 경우 원재료의 제조사가 아닌 완제품 제조사의 헤드레터 사용으로 제출 가능)

● 일반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검사 의무표기 안내

- 인도네시아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 성적서 필요

No	Parameter Test(Ind)	Parameter Test(Eng)	Max Limit	Intake per serving
1	Lemak total	Total Fat	67g / day	< 18g
2	Energi / Kalori	Calories	2150 kcal / day	
3	Protein	Protein	60g / day	
4	Karbohidrat total	Total Carbohydrate	325g / day	
5	Lemak Jenuh	Saturated Fat	20g / day	
6	Garam	Natrium	1500mg / day	< 300mg
7	Gula	Sugar	-	-

* 1일 허용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 % 적용율을 포장 단위 용량 기준으로 기재함. 10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의무 대상 표기는 포장지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 라벨링으로 부착 가능

● 일반 가공식품의 라벨링 표기 의무 사항

- 인도네시아어 표기 의무(식약청 표기 사항 사전심의 및 제품 등록·허가 필요)

No	Indonesia 표기	설명	비고
1	Product Type(제품유형명)	제품의 유형만 표기 또는 제품의 유형과 제품명을 병행 표기 가능	
2	komposisi(전성분)	전성분 표기로 함량이 높은 순으로 기재 인니어로 표기	
3	Diimpor oleh(수입사)	수입사 명 및 주소 표기	
4	Diproduksi oleh(제조사)	제조사의 명 및 주소 표기	
5	Berat Bersih(용량, Net)	제품의 내용물 용량(포장구성)	
6	BPOM RI ML(등록허가번호)	BPOM의 등록 허가 번호 기입	
7	Kode Produksi(제조Lot)	제조 Lot를 직접 표기 또는 제품 포장에 별도 인쇄식으로 기재	QR 코드 의무표기
8	Baik digunakan sebelum	Best before로 유통기간 표기를 직접 라벨 표기 또는 별도 인쇄 참조로 가능	
9	Pentujuk Penyajian	음용법 또는 제조 방법 표기	
10	Mengandungn alkohol	음료 제품 또는 알코올 포함 재료 사용 시 알코올 잔류 검사 의무 대상	± 0.01% 이상은 의무 표기

● 식약청 제출 서류(일반 가공식품 기준)

-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원본 발급요청 후 출력물 원본을 제출
- 임명서(LOA Letter of Appointment) : 한글, 영문본 준비하여 법무법인 번역 공증 후 영사와 공증
- 제품 성분 함량표(Ingredients in percent) : 영문 작성
- 각 재료에 대한 제품 규격서(Specification) : 필요에 따라 재료의 시험 성적서 요청 (제품 규격서 대신 COA 재료 시험 성적서 제출 가능)
- 제조 공정도 : 제품별 공정의 단계적 차트(회사에서 사용하는 작업지시서 개념이 아님)
- 완제품(등록 제품)의 제품 규격서 : 제조사 자가 시험 성적서
- 완제품의 시험 성적서(COA) : 미생물 5, 중금속 4 사항을 제품별 재확인(공인 성적서)
- 포장 재료의 규격서(Specification)
- 유효기간 설명서 : 제품의 유효기간 설정 사유와 표기에 대한 설명
- Batch No. 또는 LOT No.의 표기 설명서 : 번호 구성에 대한 설명 포함된 자료
- 제품의 사용법 : 국문 및 영문 자료 준비하여 모두 인도네시아어 번역 제출 의무
- 제품의 포장 디자인(컬러판 평면도) : 한글 포장 제품의 경우 한글의 인도네시아어 번역 공증 필요
- 포장 라벨링 표기사항 : 유통에 표기될 사항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어 작성 제출
- 샘플 3~5개(BPOM의 확인 요청시 방문 제출 및 시험 검사용)
- 기타 인증서 사본(HACCP, ISO 등) : HACCP 또는 ISO22000의 사본 필수(공증 불필요)

● 주요 준비서류의 주의사항

- 자유 판매 증명서는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전통의약품)을 포함하여 현재 공증 없이 한국의 지방 식약처에 온라인 발급된 전자문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 영사와 공증이 불필요함
- LOA는 영사와의 공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건으로 공증 발행 이전 문안 내용상의 제품에 대한 표기 사항과 위임 업무 사항에 대한 표기 등 표현상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 후 공증 처리에 주의 필요
- 완제품의 시험 성적서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도 필수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외부 시험기관으로부터 미생물 및 중금속의 시험 검사를 받아 그 성적서(공인기관)를 제출해야 함. 현재 한국의 시험 검사법의 기준 표기 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어 가급적 인지의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받는 것이 유리함
- 일반 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 수산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은 제조사에서 GMP / HACCP / ISO22000 중 하나를 택하여 필수적으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전성분 사용 재료의 모든 재료는 규격서(Specification)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식품류의 경우 원재료의 제조사가 아닌 완제품 제조사의 헤드레터 사용으로 제출 가능)

인도네시아 라벨링 제도 중요 정보 안내 사항

●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농수산물식품의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 의무화법 시행으로 식품과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농가·수산·가공 기업은 현지 기관을 통해 MUI 할랄 인증을 획득하거나 교차 인증대상 할랄을 신청해야 함
- 2019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적용을 유예기간을 추가하여 2024년 10월 17일부터 적용
-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보장청(BPJPH)에서 할랄 인증 접수 및 인증 관리를 시행함

* 2021년 2월부터 수입사 또는 지점(대리)회사가 위임 받아 온라인 접수 신청이 가능해짐

* 할랄 접수처 BPJPH(종교부-할랄인증보장청) - 할랄 인증 심사 LPPOM MUI(BPJPH 할랄 접수 등록 확인서 필수 제출 필요)

* 건강기능식품 등은 2026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적용

2. 발효홍삼(건강기능식품)

제품 검토 결과

- 식약청 등록 유형

No.	등록 기관	등록 유형	비 고
01	BPOM(식약청)	SI ⁷⁾	-

● 전성분 조사 설명

- 전성분의 홍삼 추출물(extract)과 홍삼 파우더를 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건기식 및 식품 유형 모두 사용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인니 식약청에서는 인삼류의 사용을 Panax Ginseng C.A Meyer and Panax Quinquifolius- American Ginseng(Ekstrak Ginseng)만 허용하고 있음. 다만 한국의 인삼류는 모두 Panax Ginseng C.A Meyer 종임으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인삼 종의 표기를 포함한 제품사양서의 준비가 필요함
- 전성분의 효소처리시스테미아 첨가물은 인니 가공식품 규정을 따를 경우 일일섭취 기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등록심사 기준을 따를 경우 사용량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전성분 보고서 자료에서 활성(Active) 재료는 인니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및 가공식품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안정성 평가 자료에 활성 재료에 대한 효능 자료, 공정도,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추가 준비되어야 함
- ‘마카(Maca)’의 경우 인니 식약청 기준 건강기능식품 사용 가능 목록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가공식품류에는 사용이 불가함
- 기타 비타민류의 사용은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모두 충족됨
- 건기식은 제조사의 GMP 인증 필수 사항을 충족하고, 활성(Active)/부형제(Excipient) 재료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재료 대상은 assay 잔여 유효 검사 및 안정성 보고서 등이 요구됨

● **제품의 전성분표 작성 기준(건강기능식품 기준으로 적용 준비시 참고사항)**

- 전성분표는 활성(Active)/부형제(Excipient) 재료로 구분되어야 하며 그 기능성 또는 용도를 함께 표기해야 함. 또한, OTSM 등급에서는 제조시 lot(또는 Batch) 대한 제조량의 기재와 함께 사용량 % 기재가 필요함

* OTSM(Obat Tradisional & Supplement Makana) :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OTSM 등록 신청시의 전성분표 작성 기본 요구사항 : 기본 타입으로 형식 변경 가능
- 일반 가공식품 등록 시에는 전성분 및 함량 표기만으로도 가능하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구분이 필수적임

7) SI(Suplement Impor)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급으로 허브 재료와 함께 비타민류 등이 복합 재료의 제품

● 완제품 의무 시험 성적서 검사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등록 대상 중 액상 제품의 재료에 대한 생산공정 및 완제품의 생산 공정상 알코올 보조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잔류 알코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잔류 알코올이 0.01% 이상인 경우 해당 검사결과를 제품 포장에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됨
- 전통의약품의 경우 전성분의 구성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잔류검사 대상임

● 주의 참고사항

- 본 제품의 전성분 구성 검토 결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 불가한 재료(마카) 및 첨가물 중 사용량 기준 초과 사항이 있으므로 인니 식약청에 건강 기능식품으로 등록을 준비해야 함
- 한국에서는 부형제를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거나 인니 기준 활성 재료에 해당되는 성분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안정성 자료 입증 요구가 많이 나올 수 있음. 또한, 인니 허용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재료의 구성 배합이 인니 신규 구성일 경우 식약청의 안정성 평가 심사국에 등록하기 이전에 사전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함. 신규 배합 구성의 경우 식약청의 사전 확인은 불가하며, 신청 접수 또는 공식 문의 시 확인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안정성 평가국의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할 연구 자료 및 근거 논문 자료, 독성 검사 자료, 유효성에 대한 근거 자료, 다른 국가의 등록 사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며, 심사평가에 따라 추가 자료들의 요구를 받아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섭취에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등록 신청사에서 소명되어야 함

인도네시아 라벨링 제도 중요 정보 안내 사항

●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농수산물식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

-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으로 식품과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농·수산·가공 기업은 현지 기관을 통해 MUI 할랄 인증을 획득하거나 교차 인증대상 할랄을 신청해야 함
- 2019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적용을 유예기간을 추가하여 2024년 10월 17일부터 적용
-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보장청에서 할랄 인증의 온라인 신청 가능
 - * 2021년 2월부터 수입사 또는 지점(대리) 회사가 위임 받아 온라인 접수 신청이 가능해짐
 - * 건강기능식품 등은 2026년부터 MUI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가 적용됨

3. 호떡

제품 검토 결과

• 식약처 등록 유형

No.	등록 기관	등록 유형	비 고
01	BPOM(식약청)	ML	-

• 성분검사 관련 필요사항

- 외부 공인 시험을 통해 검사 필수
- 성분표는 구성 함량 및 포장 구성에 맞춘 함량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함
- 성분표 작성 시 기업의 공문양식인 헤드레터를 사용해야 함
- 해당 성분표에는 제품 타입, 규격 용량이 명기되어야 함
- 혼합재료의 경우 해당 혼합 재료에 대하여 표기하고 그 함량을 명시해야 함
- 시험 검사의 항목에 따른 단위 기준이 표기되어야 하며, 한국 공인인증기관 및 인도네시아 공인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제출해야 함

• 전성분 검사 관련 유의사항

- Hot Dog Mix는 인도네시아 식품 원료 등록 시 다음 2차 하위재료명 중 해당 품목을 모두 표기해야 함
 - ① Tepung Terigu(Wheat Flour) 밀가루
 - ② Tepung Terigu Protein Rendah(Low Protein Flour) 저단백 밀가루
 - ③ Tepung Terigu Protein Sedang(Cake Flour) 케익 밀가루
 - ④ Tepung Terigu Protein Tinggi(High Protein Flour) 고단백 밀가루
 - ⑤ Tepung Terigu Terfermentasi(Fermented Flour) 발효 밀가루
- Purified Water는 다음 2차 하위재료명 중 한 가지로 선택해 표기해야 함
 - ① Air(Water) 물
 - ② Air Deionisasi(Dieonized Water) 이온 제거수
 - ③ Air Demineralisasi(Demineralized Water) 무균 산업용수
 - ④ Air Es(Cold Water) 찬물
 - ⑤ Air Mineral(Mineral Water) 미네랄 워터
 - ⑥ Air Suling(Distilled Water) 증류수
- 다음 2가지 항목은 인도네시아 식품 원료 등록 시 명칭을 변경해야 함
 - ① Soybean Oil → Minyak Kedelai(Refined Bleached Deodorized Soybean Oil)
 - ② Sweet Potato Mousse → Ubi Jalar(Sweet Potato)